

제323회

제1차 정례회  
2024. 6. 21.(금)

#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6. 3.

#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7
----------	---------

제출년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숙박요금의 일부를 해당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2024년 충북 숙박 지역상품권페이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조항 신설.

## 3.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 첨 부 1.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5. 충북 평일 숙박 지역상품권페이백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설사용료)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조(시설사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u></p>
<p>제11조(위탁관리)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u>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④ · ⑤ (생략)</p>	<p>제11조(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후단 삭제&gt;</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장 박종화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

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6. 3.

#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9
----------	---------

제출년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영동군 임신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병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임신부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영동군 임신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두 가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 충청북도 신설사업 반영(안 제3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 첨 부 1.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2부.  
3. 관계법령 1부. 끝.

##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 거주불명, 교도소 수감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지급

2.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3. 출산육아수당 지급
  4.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지원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6. 산후조리비 지급
  7. 임산부 교통비 지급
  8.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충청북도 지침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임신축하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산부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상 체류지(이하 “체류지”라 한다)가 군으로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결혼이민자인 임산부. 다만, 출산 후 체류지가 군으로 된 결혼이민자는 제외한다.
- ② 출산양육지원금: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자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2.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인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제5조(지원 안내)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개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관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진료 시 쿠폰을 제출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는다.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7조(지급 방법) ① 임신축하금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검진을 시행한 병원장은 신청인의 검사·검진일 익월 5일까지 검사·검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청 시 지정한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그 외의 지원사업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0조(포상) 군수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 임신·출산 사업별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사업명	지원내용						
임신축하금	- 30만원 ※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지급) - 둘째아: 6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지급) - 셋째아: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지급) ※자녀의 순서는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다.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름						
임신·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 · 초음파 쿠폰:10회, 기형아검사쿠폰:2회 · 임신 초기 산전검사 일부 지원 - 산부인과 이동진료 2차 검진비 지원 · 산부인과 이동진료 시 유소견자(재검자) 쿠폰 발급하여 2차 검진비 지원 - 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 검사비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검사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d> <td>임신 상담 및 교육, 엽산제 지원 임신 전 기본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동병원</td> <td>산부인과 진료 및 임신상담, 임신 전 필수 검사 시행</td> </tr> </tbody> </table>	구분	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검사 내용	보건소	임신 상담 및 교육, 엽산제 지원 임신 전 기본검사	영동병원	산부인과 진료 및 임신상담, 임신 전 필수 검사 시행
구분	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검사 내용						
보건소	임신 상담 및 교육, 엽산제 지원 임신 전 기본검사						
영동병원	산부인과 진료 및 임신상담, 임신 전 필수 검사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단축형·표준형 서비스만 지원 (연장형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표준형 서비스 기준으로 지원)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땀뻘한 태교패키지	충청북도 지침에 따름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의 관계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 의 관계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육아수당 (2023.1.1.이후 출생자)	[ ] 해당 자녀 이름 :					
	담당공무원 확인	충청북도 전입일	부	모			
		00시군 전입일	부	모			
		소속	직급	성명			
출산양육지원금	[ ] 첫째 자녀(이름 : )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유축기 대여	[ ] 사전예약 임신부 등록 2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영동군보건소 문의(740-5933-5934)						

	서비스명	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양육지원금 및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 회차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조회
- 사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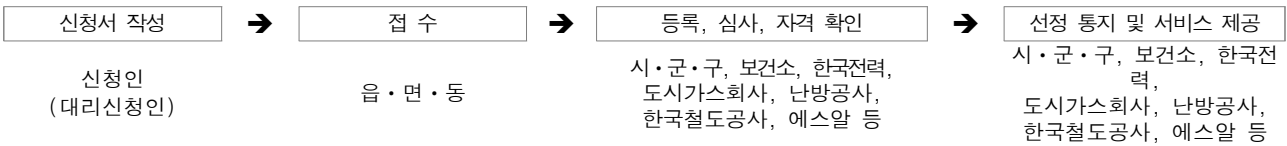
1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b>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b>				
산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연락처: )		
신생아	성 명		생년월일 (분만일)	
본인부담금환급계좌		( 은행)		
서비스 이 용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판정유형		서비스제공기관명	
	서비스 이용기간	20 . . ~ 20 . . .	서비스 기 간	<input type="checkbox"/> 단축 <input type="checkbox"/> 표준
	본인부담금액 (총서비스 이용료)			
<p>「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p>				
<b>영 동 군 수 귀 하</b>				
담당자 확인란	본인 부담금 지급 증빙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환 급 액	원
<b>첨 부 서 류</b>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서비스계약서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록지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 및 지원결정내역										지원내역						비 고	
	관 할 읍 면	신 청 일	지원대상 자녀			신청인					지 원 차 수	총 받 을 금 액	지 급 총 액 (기 지 급 액)	지 급 금 액 (당 월 지 급 액)	입금계좌			
			이 름	생 년 월 일	출 생 순 위	이 름	생 년 월 일	자 녀 와 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관리대장

연 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 원 용 내	결 정 사 항		지원일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일 자	지원여부	

\*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사업별로 기재·관리함.

# 비용추계서(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2. 비용 발생 요인

- 출산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다태아 최대 100만원)

## 3. 관련 조문

- 조례 제3조제1항제6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4. 비용추계 결과

###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나. 비용추계의 결과 : 5년간 322,500천원

- ☞ 산출내역(1년) : 50만원 × 129명 = 64,500천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40%, 군비 60%

###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5. 작성자 : 보건소장 박한석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세 출	64,500	64,500	64,500	64,500	64,500	322,500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64,500	64,500	64,500	64,500	64,500	322,500
재원조달	64,500	64,500	64,500	64,500	64,500	322,500
국 비						
도 비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군 비	38,700	38,700	38,700	38,700	38,700	193,500
기 금						
용 자						
그 밖의 재원 (지방채, 민자 등)						

# 비용추계서(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명 :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사업목적 : 영동군 내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

## 2. 비용 발생 요인

- 임산부 1인 당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게이트비) 최대 50만원 지원

## 3. 관련조문

-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임산부 교통비 지원

## 4.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결과 : 5년간 215,000천원

☞ 산출내역(1년) : 50만원×86명=43,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군비 70%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5. 작성자 : 보건소장 박한석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2,900	12,900	12,900	12,900	12,900	64,500
◦ 분만취약지역 입 산부 교통비 지원	12,900	12,900	12,900	12,900	12,900	64,500
세 출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 분만취약지역 입 산부 교통비 지원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재원조달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215,000
국 비						
도 비	12,900	12,900	12,900	12,900	12,900	64,500
군 비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150,500
기 금						
용 자						
그 밖의 재원 (지방채, 민자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충청북도 임신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생·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